

—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12월 17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12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12월 23일

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6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당직수당지급에 관하여 종전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당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
(안 제7조제4항)
- 조례의 시행일을 2004년 1월 1일로 함 (부칙)

라. 참고사항

-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7조
-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당직수당(일·숙직수당) 기준액은 자치단체가 당직시설상태, 당직근무인력, 근무형태 등 실비를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의결